4기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회부 안건

1. 기존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회부 안건

가. 1기

- ① 지방법원 경력대등부 확대 필요성 및 바람직한 운영 방향
- ② 정식재판청구/공판회부 사건의 증거분리제출 시행방안
- ③ 외국인의 체포·구속 시 영사통보 개선방안
- 4 판결서 공개제도 개선

나. 2기

- □ 영상재판 확대 여부 및 방안
- 2 구속영장단계 조건부석방제도 도입 문제
- ③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실무 개선방안

다. 3기

- ① 소액심판제도 충실화 방안
- ② 사실심 충실화를 위한 검증 및 감정 제도 개선 방안
- ③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위한 양형심리 절차의 개선 방안

2. 제4기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회부 예상 안건 🖙 바람직한 판결서 작성 방안

■ 논의의 필요성

- 법조일원화제도가 도입(2013. 1. 1. 시행)되면서 풍부한 사회적 경험을 갖춘 법조인 이 법관으로 임용됨에 따라 법원의 인적 구성이 변화되고 있음. 이에 법관의 업무에 있어서도 상세한 판결서 작성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법정에서의 충실한 재판을 통하여 소송관계인의 만족도를 향상하는 데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의가 있음
 - 현재 사법정책연구원에서 '법조일원화 시대에 걸맞은 판결문 작성방식 개선방안'이라는

주제로 연구를 진행 중이고, 2023년 상반기에는 연구성과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됨

- 「소액사건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(재민 81-6)」에 일정 범위의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조항이 삽입될 예정인바, 실무에서 소액판결서 이유 기재 방식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음
 - 3기 재판제도 분과위원회는 위 문제를 인식하고 '소액심판제도 충실화 방안'에 관한 논의를 하면서 소액사건 판결서에 적합한 양식을 제시하려는 시도를 하였으나(ex. 체크식판결서), 촉박한 일정 등으로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였음
- 민·형사판결서 작성 방식에 관한 재판예규가 제정된 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는 바, 그간의 실무관행 변화를 고려하여 재판예규를 제·개정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음
 - 판결서 작성 방식에 관한 예규에는 「판결서 작성방식의 개선을 위한 참고사항(재판예 규 제316호)」, 「판결서 작성방식에 관한 권장사항(재판예규 제625-1호)」, 「형사판결 서 작성방식 적정화에 관한 예규(재형 2014-1)」가 존재함
 - 특히, 민사판결서의 경우에는 「판결서 작성방식의 개선을 위한 참고사항(재판예규 제3 16호)」, 「판결서 작성방식에 관한 권장사항(재판예규 제625-1호)」만이 적용되는데, 이는 각각 1991년과 1998년에 제정된 재판예규로, 제정된 지 20년 이상이 경과하였음

■ 기존 논의 경과 소개

- 1991년, 1998년 예규 제정을 통한 판결서 개선 작업
- 2002년 민사소송법 개정
 - 판결서 이유 기재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주장,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전부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개정하였음('전부'라는 표현을 삭제)
 - 무변론, 자백간주, 공시송달 사건 판결에 대해서는 '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상계 판단에 관한 사항'만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
- 2006년 10월 서울중앙지법 판결서 개선 위원회 구성·운영
 - '판결서 개선 사례집' 발간
- 2007년 코트넷에 간이화 판결례를 등록하는 작업 실시
- 2010년 7월 판결서 간결화 연구반 구성·운영
 - '간결한 판결 사례집(민사)', '간결한 판결 사례집(형사)' 발간
- 2012년 6월 서울중앙지법 판결서 작성방식 개선 소위원회 구성·운영

- 2014년 7월 「형사판결서 작성방식 적정화에 관한 예규(재형 2014-1)」 제정
 - 유죄판결 이유의 적정화를 주된 대상으로 함
- 2015년 민사판결서 작성 개선사업 기초검토 TFT 구성·운영
- 2022년 사법정책연구원에서 '법조일원회 시대에 걸맞은 판결문 작성' 연구 중

■ 안건 회부 시 구체적인 연구·검토 필요 사항

- 바람직한 판결서의 작성 방안에 관한 논의
 - '법조일원화 시대에 걸맞은 판결문 작성방식 개선방안'에 관한 사법정책연구원의 연구 가 2023년 상반기에는 완료될 것으로 예상됨
 - 다양한 판결례, 판결문 샘플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, 법관의 판결서 작성에 관한 업무부담을 완화하면서도 국민이 알기 쉽고 답변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판결서 양식, 법조일원화 및 전자소송 시대에 걸맞은 판결문 양식을 연구할 필요가 있음
- 적절한 소액사건 판결서 양식 발굴 및 공유
 - 개정 예정인 「소액사건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(재민 81-6)」에서는 일정 범위의 소액사건에 대하여 이유 기재를 권장하는 취지의 조항이 삽입될 예정임
 - 소액사건의 처리에 저해가 되지 않으면서도 답변 기능을 갖춘 다양한 판결서 양식에 대하여 논의한 후, 그 결과를 공유할 필요 있음
- 예규 제·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연구·검토
 - 민·형사판결서 작성 방식을 규율하는 예규가 존재하는데, 특히 민사판결서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관련 예규가 제정된 지 20년 이상이 경과하였음
 - 예규 제정 이후 바람직한 판결서 작성 방안에 관한 법원의 연구가 상당량 누적되었는바, 이에 따를 때 예규 내용이 현행 실무와 맞지 않는 부분은 없는지, 새로 규율할 부분은 없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
 - 적절한 소액사건 판결서 양식에 관한 내용 역시 예규로 정할 부분은 없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

4기 사법정책 분과위원회 회부 안건

1. 기존 시법정책 분과위원회 회부 안건

가. 제1기

- ① 전문법원 추가 설치 여부 및 우선 순위
- ② 장애인에 대한 사법지원 개선방안

나. 제2기

- ① 전문법관 확대 방안
- ② 민사재판 1심의 단독관할 확대 방안

다. 제3기

- ① 항소심 재판 제도 개선
- ② 외국인·이주민을 위한 사법접근성 강화 방안
- 2. 제4기 시법정책 분과위원회 회부 예상 안건
- 가. ① 법관 사무분담기간 장기화 방안
- 제22차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서경환 위원이 제안한 내용(별도 자료) 참조
- 나. ② 사법의 투명성과 개방성 확보를 통한 사법신뢰 제고 방안

1) 개요

- 국민이 법원과 재판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될수록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더 높아질수 있음(과거 법원에 대한 신뢰도 조사 결과에 의하면, 일반국민의 신뢰도보다 법원이용객의 신뢰도가 더 높게 나타났음)
- 법원 및 재판 절차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여 사법신뢰를 제고하는 한편, 국민의 입장에서 필요하면서도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① 재판중계의 확대, ② 정보 제공의 확대, ③ 법교육 강화 방안 등을 보다 심층적으로 연구·검토할 필요가 있음

2) 세부 논의 항목 예시

■ ① 재판중계의 확대

● 논의 필요성

- 재판의 진행과정을 방송을 통해 국민들에게 전달하면 국민들의 사법제도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음. 또한 판결형성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적 참여를 통해 법원으로 하여금 변화된 사회적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고, 법을 사회적 필요에 적합하게 발전시킬 수도 있음(김재윤, 독일과 한국의 공개주의와 그 제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: 공개주의의 확대로서 TV공개주의에 관한 최근 독일의 논의를 중심으로 「형사법연구」, 21호)
- 재판중계가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적·물적 기반이 확대되기도 하였음
 - 2021년 소송법 개정으로 영상재판 확대 실시와 관련하여 민사소송규칙에 '인터넷 중계' 근거 규정 신설 ➡ 민사소송법 제287조의2 제2항 후문에 따른 '심리의 공개에 필요한 조치'의 하나로, 영상재판의 인터넷 중계를 공개 방법에 포함
 - 2022년 6월 사법영상포털인 「법원TV」오픈
- 2022년 7월 사법부 내에 재판중계연구반이 구성되어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
 -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 관련 쟁점 검토, 영상재판 인터넷 중계를 위한 세부 규정 마련, 재판중계를 위한 촬영 등 가이드라인 마련 등 검토할 것으로 예상
- 재판중계연구반의 연구 성과에 대하여 법원 내·외부 시각에서 검토하는 한편, 재판중계를 확대할지 여부, 확대가 필요하다면 그 구체적 방안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

● 기존 논의 경과 소개

- 「사법의 투명성과 개방성 확보를 위한 재판방송 실시 방안에 관한 연구」(2012, 법원행정처 정책연구용역)
 - 공개재판의 원칙과 재판방송
 - 재판방송에 대한 법정책적 논의
 - 재판방송 관련 사례분석
 - 재판방송 실시방안
- 「재판 중계방송에 관한 연구」(2017, 사법정책연구원)
 - 재판 중계방송의 개념 및 이론적 근거
 - 해외의 재판 중계방송

- 국내의 재판 중계방송에 관한 검토(필요성 검토 및 법정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)
- 재판 중계방송 실시방안
- 「국민의 알 권리와 재판중계제도의 도입방안」심포지엄(2017. 1. 20., 사법정책연구원과 한국비교형사법학회 공동주최)
 - 국민의 알 권리와 재판중계제도
 - 각국의 재판중계제도의 현황과 시사점
 - 하급심 재판중계의 합리적 구현방안 모색
- 안건 회부 시 구체적인 연구·검토 필요 사항
 - 재판중계 확대 필요성에 관한 논의
 - 재판중계를 확대할 경우 대상 사건 및 범위
 - 재판중계를 확대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(관계자 동의 필요 여부, 당사자 신청권 부여 여부 등)

■ ② 대국민 정보제공의 확대

- 논의 필요성
 - 각급 법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법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바,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이나 제공방식 등이 적절한지를 사법서비스 수요자 입장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음
 - 사법의 투명성과 개방성 확대를 위하여 사법수요자인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,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등을 선별하고, 효과적인 정보 제공방식에 대한 연구와 논의 필요함
- 기존 논의 경과
 - 사법정책연구원, 「국민의 사법절차에 대한 이해도 및 재판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의 분석」(2015)
 - 법원 홈페이지 등의 이용 경험 유무, 법원 홈페이지 등 이용의 도움 정도 등 조사되어 있음
 - 기타 홈페이지 개선을 위한 내부 검토보고서 등
- 안건 회부 시 구체적인 연구·검토 필요 사항
 - 해외 각국 법원 홈페이지, 국내 다른 헌법기관 등의 정보 제공 현황 분석
 - 대법원 및 각급 법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추가로 제공할 필요가 있는 정보 등 연구·검토

(사무분담표, 기일정보, 재판진행 상황 등)

- 정보제공 방식의 개선 필요성 등 검토

■ ③ 대국민 법교육 강화

● 논의 필요성

-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는 제도개선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제도나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, 사법부가 들인 노력의 진정성 등이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될 때 비로소 가능할 수 있음
- 사법교육은 법교육 자체가 의도하는 교육 목표 외에도 사법신뢰증진을 위한 유효·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음

● 기존 논의 경과

- 법원행정처 내부 검토서, "사법 교육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(안)"
- 사법정책연구원, 「판결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이를 알릴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연구」(2015)
- 안건 회부 시 구체적인 연구·검토 필요 사항
 - 외국 법원의 법교육 현황
 - 현재 사법부가 시행하고 있는 법교육 현황에 대한 점검 및 개선방안 검토
 - 유관기관과의 협력 방안